

국 토 교 통 부

시 정 요 구

제 목 기존도로 유지관리비 설계변경 미이행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내 용

강원도(○○○○과)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비의 100%¹⁴⁷⁾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03. 12. 17. ○○특별시 ○○구 ○○동 000000-00에 있는 ○○○○(주)(대표자 ○○○)와 1개사¹⁴⁸⁾와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82,611,600,000원¹⁴⁹⁾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12. 22. 착공하여 2016. 11. 19. 준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설계내역에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1,294,350,000원이 반영되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147)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이 2015년부터 남은 공사금액의 90% 지원

148) 강원도 ○○시 ○동 000에 있는 ○○○○○○(주) 대표자 ○○○

149) 2015. 11. 20. 총 공사부기금액 151,128,000,000원으로 최종 변경 계약됨

또한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교통부, 2013. 5)」 Ⅱ.(공종별 기준) 20.(기존도로 유지보수)에 따르면 기존도로 유지보수비는 공종을 명기하여 수량을 산출할 때에는 구도로 활용계획 및 공사기간 중 유지관리계획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강원도(○○○○과)에서는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잠정공사비로 반영되어 있는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1,294,350,000원 중 [표]와 같이 기존도로(3.1km)에 대한 덧씌우기(19,530㎡), 소파보수(2,820㎡) 및 차선도색(1,645㎡) 등으로 550,000,000원을 사용할 계획이고 51,040,000원은 장래 구체적인 사용계획(준공일 2016. 11. 19.)이 없으므로 설계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2016. 10. 7.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하지 않고 있어 공사비 51,040,000원 상당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표] “기존도로유지관리비 사용현황”

(단위: 천원)

공 사 명	설계반영(A)	기사용(B)	장래 사용계획(C)	장래 미 사용계획(A-B-C)
○○-○○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1,294,350	693,310	550,000	51,040

* 강원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강원도지사는

기존도로 유지보수비 중 집행계획이 없는 51,040,000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 하시기 바랍니다.